##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424 발의연월일: 2021. 7. 9.

발 의 자:류성걸・김은혜・金炳旭

정운천 • 박덕흠 • 김예지

주호영 · 강대식 · 박대수

이채익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이상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선거 시에 후보자들 간경쟁이 심화되어 여러 부작용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 발생하는 등 선거 공정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업무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 원회에 의무 위탁을 통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 고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며 또한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상근이사의 자질을 높이며,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직장 내 성범죄 및 괴롭힘을 근절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 금고 중앙회 임원의 준법성과 대외 신뢰성을 높이며,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여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새마을 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직원보호에 앞장서고자 함(안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8조의3 등).

#### 법률 제 호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제17조제4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9조제10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19조에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사장은 금고의 경영상태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과를 할 수 있다.
  - ① 이사장은 제10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0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제7호·제8호의"를 "제3호의"로, "2년"을 "3

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1호까지에"를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로 한다.

- 7. 제85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의2 중 "제21조제1항제8호에"를 "제21조제1항제8호·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로 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합동연설회에서의"를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임원의임기만료일 전 7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사업장을 포함한다)로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4. 도로·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 제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임원선거의"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선거"로,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금고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중 "결산보고서에 거짓으로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을

"거짓으로 등기, 공고 또는 결산보고서에 기록을"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고는"을 "금고 및 금고의 임직 원은"으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3(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마련을 갈음한다.
  -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직원은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금고는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64조의2제6항 전단 중 "제12호까지"를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

호까지,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 5조제6항"을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보고, 제25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5호까지의"를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 및 제15호의"로 한다.

제85조제3항 중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임직원에게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의 임직원
- 2.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금고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2호·제4호의 개정 규정(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선거운동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1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이사회) ①・② (생 략)	제17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	③
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5. 상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u>5.·6.</u> (생 략)	<u>6.·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	4
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u>&lt;신 설&gt;</u>	1. 제19조제10항에 따른 성과평
	<u>가 결과</u>
<u>1.</u> · <u>2.</u> (생 략)	<u>3.</u> · <u>4.</u> (현행 제1호 및 제2호
	와 같음)
<u>3.</u> (생 략)	<u>2.</u> (현행 제3호와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임원과 직원) ① ~ ⑨	제19조(임원과 직원) ① ~ ⑨
(생 략)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⑩ 이사장은 금고의 경영상태
	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
	근이사에 대한 성과평과를 할

<신 설>

<신 설>

-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1. ~ 6. (생 략)
  - 7. 제85조제2항, 제4항 및 제5 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제85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 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

수 있다.

- ① 이사장은 제10항에 따라 성 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⑩ 제10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85조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죄를 범하여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제3호·제7호·제8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 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11. (생 략) <신 설>

<신 설>

9.	제3호의
	<u>3년</u>

10. • 11. (현행과 같음)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 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

12. ~ 18. (생략)

### ②·③ (생 략)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게	٦٦	형법_		제2	573	조저	17	항,
	제26	50조	제1호	항,	제2	612	조(ス	12	<u>60</u>
	조저	]2항	의	죄님	=	제.	외현	ŀΓ	<del>}</del> ),
	제26	52조	(제2	603	<b>존제</b>	2항	의		<u>죄</u>
	는 ;	제외	하며	, 저	125	7조	의	예	에
	<u> 따르</u>	드는	경우	-로	한.	정한	·	)	또
	는	제32	4조9	의 3	죄를	. 받	計하	여	3
	<u>00</u> 민	l 원	이상	날의	벌	급형	형을	-	<u>선</u>
	고빈	<u> </u>	コ	형이	회	-정:	된	후	3
	년이	] 지	나지	0}	니	한 /	사림	<u>-</u>	
12	. ~	18.	(현	행고	<b>구</b> 같	<u></u> 음	)		
2	• ③	) (ক্	현행고	가 같	날음	)			
4									
	<u>}</u>	제11	호까	지,	제]	[1ই	[의	2	<u>및</u>
제	11ই	<u> 의3</u>	에						
21	조의	]2(별	널금 형	형의	분	리	선그	고)	_

- 제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저 (생 략)
  -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없다.
  - 1. ~ 4. (생 략)
  - 5.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사업장을 포함

     한다)로 방문하거나 특정장

     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신 설>

	-
	-
	-
세22조(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①	)
(현행과 같음)	
2	-
	-
	-
	-
	-
<u>.</u>	
1. ~ 4.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③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 회원을

-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 | ④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생략)
- 2. 금고에서 개최하는 <u>합동</u>연설 회에서의 지지 호소
- 3. (생략) <신 설>

<신 설>

④ (생략)

는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사

호별(사업	장을	포함한다	<b>十</b> )로	방
문하거나	특정	청장소에	모ㅇ	] 게
<u>할</u> 수 없다	<u>}.</u>			

- 1. (현행과 같음)
- 2. -----합동연설 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 3. (현행과 같음)
- 4. 도로·시장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 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 에서의지지 호소 및 명함 배
-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 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 서의 지지 호소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다.
-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금고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①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저 ① ~ ③ (생 략)

④ 임원이 <u>결산보고서에 거짓</u> 으로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금고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 과 같다.

⑤ ~ ⑧ (생 략)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저 금지 등) ① <u>금고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

<u>장의 선거</u>	-
	_
	_
	_
	<u>귀</u>
탁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르. 르.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의	븨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칭	<u>하</u>
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스	<u> </u>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기	긱
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	•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丰
<u>할 수 있다.</u>	
베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거짓으로 등기, 공</u>	卫
또는 결산보고서에 기록을	-
	_
	_
⑤ ~ ⑧ (현행과 같음)	
세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긔
금지 등) ① <u>금고 및 금고</u>	기
임직원은	-

대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② (생략)

<신 설>

\_\_\_\_\_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금고는 고 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 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

   무담당자 교체
-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 충처리위원을 선임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을 갈음한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저 등) ① ~ ⑤ (생 략)

(6)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 기・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25조제6항 중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금고에 대하여 제1
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금고는 제2항에 따른 직원
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b>6</b>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
의2·제11호의3·제12호
제23조제1
<u> </u>
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overline{7}$	<b>.</b> .	$\bigcirc$	(생	라
(1)	$\sim$	(9)	( ^7	4)

① 제6항에 따라 중앙회에 준용하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임원의 결격사유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벌칙) ①・② (생 략)

③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 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 ⑥ (생 략)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각각
보고, 제25조제6항
⑦ ~ ⑨ (현행과 같음)
①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
지, 제11호의2 · 제11호의3 · 제1
2호·제12호의2·제13호·제13
<u>호의2·제14호 및 제15호의</u>
유)
③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u>의 규정</u>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7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

당하는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1. 제22조제2항(제64조의2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한 자
- 2. 제22조제3항(제64조의2제6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을 한 자
- ② (생략)

제88조(과태료) ① (생 략) 제8

임직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1.	<u>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u>
2.	 제22조제4항
2	(현행과 같음)
88	조(과태료) ① (혂행과 같음)

- ② 제28조의2를 위반한 금고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 1.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불공 <u>정거래</u>행위를 한 금고의 임 직원
  - 2.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 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 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금 卫
  - ③ (현행과 같음)